##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성일종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665

발의연월일: 2025. 4. 9.

발 의 자:성일종・우재준・강선영

유용원 · 이종욱 · 김소희

최수진 • 고동진 • 안상훈

송석준·박덕흠 의원

(1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우수한 군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교 과정을 지원하는 예비장교후보생 등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단기복무부사관에게는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려금과 장려수당은 단기복무 지원을 독려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으로서 그 취지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은 장교로 임용되기 전의 사관후보생에게 지급되므로 장려금 전액이 비과세로 지급되는 반면 장려수당은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되므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단기복무 지원금의 형평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단기복무 부사관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 제도를 폐지하고 지원금을 장려금으로 일원화하여 단기복무 부사관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인력의 군 유입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62조의2제1항제4호 신설).

법률 제 호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의2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 부사관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 각	제62조의2(장려금의 지급) ①
군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려	
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	
62조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	
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4. 제6조제7항에 따른 단기복무
	<u>부사관</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